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국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정책 수립해 공공기관 등의 전문성 확보와 건축시장의 정상화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시·도지사는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 (안 제9조)

- 공공기관 등은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한 지침서, 과업지시서, 계약, 감독 및 검사 등 발주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총괄건축가등, 공공건축가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 수립 및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등을 위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 (안 제16조)

- 공공기관 등은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발주, 설계의도 구현, 성과 평가 등 이 법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성과평가 (안 제21조)

- 공공기관 등은 공공건축사업을 완료 시 준공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제공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축 복합화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을 복합화해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시 및 건축등과 관련한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 녹색건축화 (안 제30조)

- 공공기관 등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공건축특별법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182 |
|----------|------|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허 영 · 강선우 · 인재근
전재수 · 서삼석 · 장경태
김윤덕 · 조용천 · 강준현
이개호 · 김수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축은 도시미관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은 주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 구심점이자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설임.

그러나 그동안 획일적이고 품격이 낮은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의 계획 등으로 공공건축이 조성되면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낮은 접근성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2018년에는 같은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설계공모 활성화, 설계의도 구현, 공공건축 지원센터,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이 도입되어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사

업절차가 각각 법령별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공공건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범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 발주기관의 전문성 확보, 공공건축사업 시행과정의 체계화, 공공건축 복합화·녹색건축화 등 최근 요구되는 정책적·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등은 전문성 확보와 건축시장의 정상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나.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정부는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7조)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증가,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및 재정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함.

라.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안 제9조)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한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업체 선정 및 계약방식의 결정, 계약, 감독 및 검사 등 발주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마. 총괄건축가등, 공공건축가(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등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와, 개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전문가로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안 제16조)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을 위하여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발주, 설계의도 구현, 성과평가 등 이 법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을 수행하여야 함.

사. 성과평가(안 제21조)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제공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아. 공공건축 선도사업의 실시(안 제2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적이고 품질 및 품격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건축사업을 공공건축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공공건축 복합화(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공공기관등은 재정부담 경감, 토지이용 효율화,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 대상 선정 시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도시 및 건축 등과 관련한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차. 공공건축 녹색건축화(안 제30조)

공공기관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대상 선정 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공건축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건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공건축사업”이란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로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나.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어항재생사업

다.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 「관광진흥법」 제54조의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건축기획”이란 공공건축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5. “복합화”란 공공건축의 조성 및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대지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용도의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건축기본법」 제2장에 따른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의 공공성·창의성·효율성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이 건축시장의 정상화 및 관련 산업의 활

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건축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건축 정책 수립 및 시행

제5조(공공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건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공공건축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건축의 현황·수요예측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 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연차별 · 관계기관별 시행계획

5. 그 밖에 공공건축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국가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건축 정책 협의회) 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공건축 정책 및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건축 정책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공공건축 정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증가,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및 재정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건축의 현황 및 운영 실태, 신규 조성 및 운영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의 조성, 평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축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건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공공건축의 조성 현황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총괄건축가등 및 공공건축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에 따른 우수 설계자 및 시공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등에게 공공건축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공공건축 관련 정보의 조사·구축·운영 등을 의뢰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 정보체계는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과 연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

제9조(공공기관등의 전문성 확보) ①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한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업체 선정 및 계약방식의 결정, 계약, 감독 및 검사 등 발주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공건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총괄건축가등 및 제11조에 따른 공공건축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건축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을 제13조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의 발주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다른 공공건축사업의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총괄건축가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등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건축가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건축가등을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등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건축가)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등의 개별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대하여 조정·자문하는 전문가로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 공공기관등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재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등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공공건축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 구조, 설비 등 설계에 관한 기준
2. 정보통신, 친환경, 내진, 방재, 방범, 화재, 에너지효율 등 성능에 관한 기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공공건축사업의 절차

제16조(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 ①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 제17조에 따른 건축기획
 3. 제18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4. 제19조에 따른 설계발주
 5. 제20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6.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7.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및 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사업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건축기획) ①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녹색건축물 확대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공기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14조에

다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사업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총괄건축가등 및 제11조에 따른 공공건축가
2. 제12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3. 제13조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
5. 그 밖에 공공기관등이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업계획 사전검토) ① 공공기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12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기

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공공건축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건축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상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계발주) ①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공공건축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건축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공모 방식의 적용대상·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등 일정 자격조건을 가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건축의 설계를 해당 사업 내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공기관등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⑥ 공공기관등은 신진건축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의 설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의 경력 등을 제한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축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시공사·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공공건축사업의 착공 전에 체결할 수 있다.

④ 시공사 및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과정에서의 설계자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설계도서와 다른 요구를 하여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건축과정 단계별 설계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성과평가) ① 공공기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제공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내용·방법,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건축사업의 용역대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업무범위 및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을 발주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건축의 품격향상 및 복합화·녹색건축화

제23조(공공건축 선도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적이거나 품질 및 품격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과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건축사업을 공공건축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정부는 공공건축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 선도사업의 지정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우수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선정) ① 공공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사업에 참여한 설계자와 시공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공공건축 설계자, 우수 공공건축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등은 설계 및 시공 발주에 우수 공공건축 설계자 및 시공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우수 공공건축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우수 공공건축의 선정) ① 정부는 혁신적이거나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을 선정하고 이에 이바지한 관계자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건축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관계자 의견수렴) ① 공공기관등은 공공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자 의견수렴에 관한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공건축 복합화사업의 시행) ① 공공기관등은 재정부담 경감, 토지이용 효율화,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공공기관등이 공공건축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이하 “복합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주체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등과 공공건축 복합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등과 협의하여 복합화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절차 및 내용, 그 밖에 사업절차, 사업 추진방식, 재정분담 등 복합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복합화건축의 운영 및 관리) ① 복합화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건축(이하 “복합화건축”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화건축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복합화건축 내 점유부분의 운영주체는 해당 점유부분의 점유자로 하며, 점유부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복합화건축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합화건축을 점유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유면적을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9조(복합화사업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대상 선정 시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차등보조율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복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일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등은 개별 사업별 법령 및 규정을 따르며, 공용 공간 등에 대한 공사비 분담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등은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기준, 용적률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제30조(공공건축 녹색건축사업 활성화) ① 공공기관등은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5조 및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소관 사업의 공모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총괄건축가등 및 공공건축가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3.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제3호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4. 제19조에 따른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및 관계자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총괄건축가등 및 공공건축가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 제19조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및 관계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7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과정에서 설계자에게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설계도서와 다른 요구를 하여 사업을 지연시킨 설계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기본법」 제3조”를 “「건축기본법」 제3조 및 「공공건축특별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10호 중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설계공모”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건축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로 한다.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앞의 “제7장 벌칙”을 “제6장 벌칙”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제3항”을 각각 “「공
공건축특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